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신설 2017. 3. 7.>

[ ] 허가증·[ ] 등록증·[ ]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
	주소	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
	재교부사유 [ ] 분실 [ ] 훼손 [ ] 기재사항 변경	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[ ] 허가증·[ ] 등록증·[ ]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획재정부장관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· 등록증 또는 지정서	수수료 없음

유 의 사 항

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제조업자의 경우: 기획재정부장관
2. 수입판매업자의 경우: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
3. 도매업자의 경우: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4. 소매업자의 경우: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 및 검토	→	결 재	→	허가증 등 작성	→	허가증 등 발급	→	교 부
신청인		처리기관 : 기 획 재 정 부/ 시 · 도 / 시 · 군 · 구								

210㎜ × 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